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신용보증기금

2. 조치일 : 2021. 11. 10

3. 조치내용

대상	내용
기 관	개선사항 3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⑴ 상거래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개선

내규 「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기준」 제55조의3 등에 따라, 보증해지·채권상환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 정보에 대해 단계별 접근제한·분리보관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나,

단계별 보안조치 결과에 대한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검증·확인 및 분리보관(2단계)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부여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, 조회자·승인자·조회목적 등 접근이력의 사후 확인이 어려워 보안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,

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단계별 보안조치 결과에 대한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확인 절차와 분리보관된 고객정보의 접근절차 및 기록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

또한, 단계별 보안조치절차를 자동화하기위해 분리보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주기에 수행됨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보존기한 5년을 위반하여 분리보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2)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개선

(가)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개선

○○○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, 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은 시스템별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부여하고 각 부서별 부여한 접근권한의 적정성은 정보보안센터에서 점검하고 있으나,

○○○·△△△·□□□은 수작업으로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 인사이동·퇴직 등의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없어 권한없는 자가 접근할 우려가 있고,

또한, ○○○·△△△은 권한변경 이력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

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권한 변경·말소하고 관련 변경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접근권한 관리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나)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선

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*을 월1회 점검하고 있고,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각 서버 저장장치에 1년 이상 저장하고 백업시스템을 통해 위·변조 등 무결성 검증을 하고 있으나

* 업무시스템, 서버, 데이터베이스 등 접속기록

○○○○.○.○.~○○○○.○.○.기간 중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중 일부(업무시스템 접속기록)의 점검주기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있고,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중 일부(업무시스템·데이터베이스 접속기록) 저장시 웜디스크*를 사용하지 않아 위·변조 가능성이 우려되므로

* WORM(Write Once Read Many) : 한번 기록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저장매체

접속기록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속기록 점검절차에 따라 철저히 점검하고 접속기록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3) 개인신용정보 조회 적정성 점검 절차 개선

내규 「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기준」에 따라, 각 부서는 매영업일마다 직전 영업일에 조회한 신용정보 내역을 해당 부서장(팀장)이 확인 후 결재하는 등의 점검절차를 마련·운영하고 있으나,

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총괄하는 신용정보보호·관리부서는 각 부서의 조회 적정성 점검을 확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·운영하지 않아 일부 신용정보 조회기록상 조회용도, 조회부서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,

신용정보보호·관리부서는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및 누설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기록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강화하고,

아울러, 정보보안업무기준에 따르면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유출, 대외비 자료 무단반출 등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, 부당 조회 등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이 없으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신용정보의 관리적 보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